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장규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75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장규원 의원

찬 성 자 : 고영찬 의원

1. 제정이유

기관과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승인대상, 기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 규정(안 제3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요건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5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 승인취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 규정(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8. 23. ~ 2024.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명칭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에 있어 대상과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후원 명칭의 사용승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이란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① 후원명칭 사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
4. 기타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2. 단순한 공연성 행사
3.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4. 전문적인 안전관리, 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사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제4조(신청요건 및 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개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안전 관리계획 포함)
3. 신청기관 및 단체의 현황
4. 신청기관 및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표창장 및 상장의 수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장·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접수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기관 및 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제4조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 내용, 규모 및 공익성 행사인지 여부
3. 신청기관 및 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를 제외한 타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
5. 표창장 및 상장 수여 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후원명칭 사용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의회사무국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신청 기관 및 단체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최저 3년 이상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의회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기관 및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창장 · 상장수여 신청서(예시)

수상자 선정 및 방법

① 표창수여자 선정 및 심사방법	(예시)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절차(예선, 본선) - 심사기준(예선, 본선) - 수상자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② 수상 내역	(예시) - 대통령 표창 - ○명 - 서울시의장상 - ○명 - 서울시장상 - ○명 - 서울시금천구의회의회장상 - ○명

③ 수상자 인적 사항

연번	구분	이름	직위(업)	소속	생년월일(남/여)	비고
	상장/표창					

※ 후원명칭사용과 상장 및 표창장 수여 동시 요청 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

※ 표창 또는 상장 수여 대상자가 행사 당일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수상자가 신청 시점에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③번란은 생략할 수 있음.

행사결과보고서

행사개요

① 행사명	
② 주최	
③ 일시	
④ 장소	
⑤ 기타	

행사 결과

-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 (사본첨부)
- 시상내역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등)

평가 및 의견

※ 행사 사진 등 첨부